

독일의 편집정보 보호



글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기자는 편집 과정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룬다. 그것은 성명, 사진,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대부분의 정보와 관련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들은 조사되고, 수집되며, 기사를 통해 공개되고,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 아카이브로 이전된다.

기사가 나가기까지 전 과정에 거쳐 개인정보가 주요하게 이용되지만,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의 이해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 지는 기사들에게 항상 고민을 안겨준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편집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편집정보 보호와 독일 언론평의회 역할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¹⁾은 2011년 EU정보보호지침(Daten-schutz-Richtlinie) 95/46/EG²⁾에 의거하여 개정되었다. EU의 지침은 언론, 예술, 문화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규정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개정되어 언론의 편집정보 보호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작되었다.

편집정보 보호에 대한 자율규제의 기본 취지는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³⁾ 사이의 균형에 있다. 취재와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가공 작업에 대한 규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언론자유를

1) 연방정보보호법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연방정보보호법 1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격권을 고려하여,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법률은 신문과 잡지와 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이 지 않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편집, 이용, 수집을 포괄한다.

2) Richtlinie 95/4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4.10.1995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Datenverkehr

3) 인구조사와 관련된 판결에서 독일연방헌법정이 명명한 개념(BVerfGE 65,1)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타인에게 전달되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정보 조사, 처리, 범위, 목적, 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침해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독일 사회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편집 업무와 관련된 정보보호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감독기구를 배제하였다. 동시에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편집 과정에 대한 정보보호는 인격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언론규약과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감독기구를 통한 국가의 개입을 막는 동시에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제하고 감시할 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독일 언론평의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편집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는 예방과 불만처리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예방과 관련하여 독일 언론들이 편집 업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언론규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주기적으로 편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편집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만처리와 관련하여 독일 언론평의회는 편집정보 보호를 위한 불만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위원회 업무는 기본적으로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보도 관련 불만처리위원회의 업무와 일치한다.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출판인과 기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제기된 불만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가 부과된다.

한편, 2009년부터 독일 언론평의회는 편집이 이루어진 보도내용을 다루는 텔레미디어에 대해서도 불만처리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편집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는 인터넷까지 확대되었다.

편집정보 보호와 언론규약

언론규약은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이라는 큰 틀에서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규약 8조 인격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언론은 사적 영역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공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언론에서 이에 대해 보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도를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언론은 정보자기결정권에 주의하고 편집상의 정보보호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⁴⁾

4) Die Presse achtet das Privatleben und die Intimsphäre des Menschen, Berührt jedoch das private Verhalten öffentliche Interessen, so kann es im Einzelfall in der Presse erörtert werden. Dabei ist zu prüfen, ob durch eine Veröffentlichung Persönlichkeitsrechte Unbeteiligter verletzt werden. Die Presse achte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gewährleistet den redaktionellen Datenschutz.

또한, 언론규약 전문에는 언론이 편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가공하고, 이용할 경우 편집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적시하였다. 취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보도 후 DB화할 때까지 언론은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적 영역에 주의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⁵⁾

이외에도 언론규약 전반에 걸쳐 편집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미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편집정보 보호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것은 다시 연방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서로 연관을 맺으며 법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연방정보보호법 3조 1항에 따르면 특정인의 개인적 혹은 사실적 관계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정의되며,⁶⁾ 언론에서 성명 혹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특정인의 구체적 관련성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편집 업무에 언론규약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가 공개되는 시점과 그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보도 전, 다시 말해 편집 이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보도에 있어서 취재를 위한 조사가 선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정보가 기자들에 의해 수집되어 처리된다. 언론규약은 보도 전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재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언론규약 4조⁷⁾는 개인정보를 획득할 때 정보 출처와 사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4조 2항⁸⁾은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신체 혹은 정신적으로 완전치 않고, 자살 충동과 같이 정신적으로 극단적 상황에 있거나,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취재한 보도를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공공의 이해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신중함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언론규약 8조를 통해 편집 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8조 1항(1)은 사건·사고,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 용의자, 원고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사진이나 어휘에서 노출되면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⁹⁾ 8조 1항(2)에서는 특히 사건·사고의 피해자 혹은 피고의 성명이 노출되면 안 되지만, 시사와 관련되거나 특별한 부수적 현상을 동반하는 인물에 한해서 예외가 인정된

5) Die Regelungen zum Redaktionsdatenschutz gelten für die Presse, soweit sie personenbezogene Daten zu journalistisch-redaktionellen Zwecken erhebt, verarbeitet oder nutzt. Von der Recherche über Redaktion, Veröffentlichung, Dokumentation bis hin zur Archivierung dieser Daten achtet die Presse das Privatleben, die Intimsphäre und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s Menschen.

6) 이외에도 주소, 나이, 전화번호, 재산상황, 이력, 특정 단체나 집단의 소속 여부, 건강 상황 등도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로 규정되었다.

7) Bei der Beschaffung von personenbezogenen Daten, Nachrichten, Informationsmaterial und Bildern dürfen keine unlauteren Methoden angewandt werden.

8) Bei der Recherche gegenüber schutzbedürftigen Personen ist besondere Zurückhaltung geboten. Dies betrifft vor allem Menschen, die sich nicht im Vollbesitz ihrer geistigen oder körperlich Kräfte befinden oder einer seelischen Extremsituation ausgesetzt sind, aber auch Kinder und Jugendliche. Die eingeschränkte Willenskraft oder die besondere Lage solcher Personen darf nicht gezielt zur Informationsbeschaffung ausgenutzt werden.

9) Bei der Berichterstattung über Unglücksfälle, Straftaten, Ermittlungs- und Gerichtsverfahren veröffentlicht die Presse in der Regel keine Informationen in Wort und Bild, die eine Identifizierung von Opfern und Tätern ermöglichen würden.

다고 밝혔다.¹⁰⁾ 8조 1항(3)에서는 보도에 등장한 가족 혹은 친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고,¹¹⁾ 8조 1항(5)에서는 공적 업무에 한해서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¹²⁾ 8조 1항(6)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약 하에 실종자의 사진과 성명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³⁾ 이외에도 병원, 요양원, 구치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하고(8조 2항),¹⁴⁾ 환자의 병명이나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8조 4항),¹⁵⁾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자살자의 신원 혹은 자살방법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8조 5항).

한편, 인격권과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 특별히 강조되는 사안이 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보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편집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신중보도 의무뿐만 아니라, 공적 이해와 관련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균형 잡힌 편집이 요구되는 것이다. 언론규약에서는 13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13조 1항에 따르면 언론은 범행인 혹은 용의자로 표현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백하여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당사자가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한정하였다.¹⁶⁾ 그리고 13조 3항에 의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보도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보도를 주문하였다.¹⁷⁾

보도 이후, 즉 편집된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도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정을 위한 청구권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조사를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언론규약 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미 공개된 보도 혹은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기관은 이것을 공정한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¹⁸⁾ 또한, 언론규약 3조 1항에 의거하여 이미 공개된 보도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⁹⁾

-
- 10) Opfer von Unglücksfällen oder von Straftaten haben Anspruch auf besonderen Schutz ihres Namens. (중략) Ausnahmen können bei Personen der Zeitgeschichte oder bei besonderen Begleitumständen gerechtfertigt sein.
- 11) Bei Familienangehörigen und sonstigen und sonstigen durch Veröffentlichung mittelbar Betroffenen, die mit dem Unglücksfall oder der Straftat nichts zu tun haben, sind Namensnennung und Abbildung grundsätzlich unzulässig.
- 12) Bei Amts- und Mandatsträgern können Namensnennung und Abbildung zulässig sein, wenn ein Zusammenhang zwischen Amt und Mandat und einer Straftat gegeben ist.
- 13) Namen und Fotos Vermisster dürfen veröffentlicht werden, jedoch nur in Absprache mit den zuständigen Behörden.
- 14) Der private Wohnsitz sowie andere Orte der privaten Niederlassung, wie Z.B. Krankenhaus-, Pflege-, Kur-, Haft- oder Rehabilitationsorte, genießen besonderen Schutz.
- 15) Mit Rücksicht auf ihn und seine Angehörigen soll die Presse in solchen Fällen auf Namensnennung und Bild verzichten und abwertende Bezeichnungen der Krankheit oder der Krankenanstalt, auch wenn sie im Volksmund anzutreffen sind, vermeiden.
- 16) Die Presse darf eine Person als Täter bezeichnen, wenn sie ein Geständnis abgelegt hat und zudem Beweise gegen sie vorliegen oder wenn sie die Tat unter den Augen der Öffentlichkeit begangen hat.
- 17) Bei der Berichterstattung über Ermittlungs- und Strafverfahren gegen Jugendliche sowie über ihr Auftreten vor Gericht soll die Presse mit Rücksicht die Zukunft der Betroffenen besondere Zurückhaltung üben.
- 18) Veröffentlichte Nachrichten oder Behauptungen, insbesondere personenbezogener Art, die sich nachträglich als falsch erweisen, hat das Publikationsorgan, das sie gebracht hat, unverzüglich von sich aus in angemessener Weise richtigzustellen.
- 19) Für den Leser muss erkennbar sein, dass die vorangegangene Meldung ganz oder zum Teil unrichtig war.

편집정보 보호 관련 불만 현황

편집 상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론규약에 따르면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한정하며, 청구권의 행사와 적용은 일반 보도중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해당 사안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는지 고려하고, 독일 언론평의회가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불만처리 대상인지 확인한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해 근거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 사안은 불만처리위원회로 이첩되어 구체적 제재사항이 결정되게 된다.

편집 관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만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8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가 2010년에 25건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꾸준히 20건 내외의 불만이 독일 언론평의회에 제기되었다. 제기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제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먼저 ‘이유 없음(unbegründet)’으로 기각된 불만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불문결정(begründet ohne Maßnahme)’, ‘주의(Hinweis)’, ‘견책(Missbilling)’,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 ‘비공개경고(nicht-öffentliche Rüge)’로 나뉘는 제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편집정보 침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이유는 해당연도에 발생한 대형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대형사건 혹은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 보도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도에 대한 불만제기 역시 증가한다. 2010년은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러브퍼레이드(Love-parade)’ 사건과 독일 출신 베네딕트(Benedict) 교황에 대한 통속지의 사진으로 인해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만제기된 건수는 2008년 729건과 2009년 1,268건에서 2010년에 1,661건으로 급증하였다. 편집정보에 대한 불만 역시 이러한 보도 불만과 더불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보도량의 증가와 더불어, 독자의

견 혹은 투고편지 등도 증가한다. 편집 관련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독자투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2010년도 편집 관련 불만이 증가한 것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브퍼레이드 사고 당시 모습
(출처 : 프라이에 프레세(Freie Presse),
「Staatsanwaltschaft will Strafprozess nach
Loveparade-Katastrophe」, 2014년 2월 1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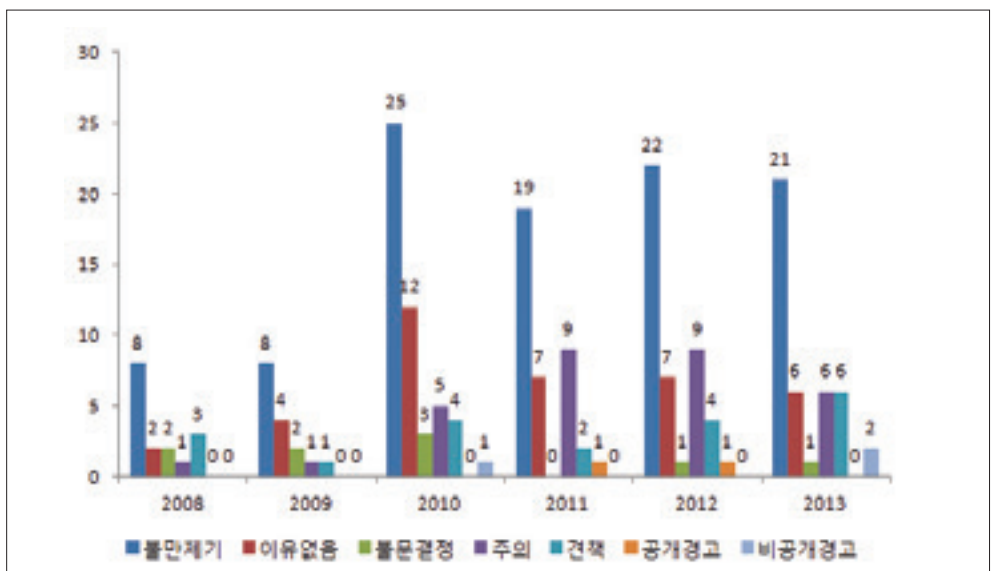


러브퍼레이드 사고 당시 모습
(출처 : 슈배비쉬 짜이퉁(Schwäbisch Zeitung),
「Schwere Polizeifehler bei Loveparade」,
2011년 5월 15일자)



문제가 된 교황에 대한 통속지의 사진
(출처 : 티타닉(TITANIC), 「Die undichte Stelle ist gefunden.」, 2012년 6월호)

〈편집정보 불만 처리〉^{20) 21)}



한편, 편집 관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판단이 점차 엄격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까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비중이 제기된 불만 건수의 최대 50%에 이르기도 했지만, 그 이후 ‘이유 없음’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제재를 의미하는 ‘불문결정’, ‘주의’,

20) Deutscher Presserat (2010), Bericht zum Redaktionsdatenschutz 2010.

21) Deutscher Presserat (2014), Bericht zum Redaktionsdatenschutz 2014.

‘견책’, ‘공개경고’, ‘비공개경고’의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제재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고’보다는 ‘주의’와 ‘견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진과 이름 공개 관련 불만

개인정보가 편집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된 사례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름과 사진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개되어 제기된 불만들이다. 이것은 편집정보 침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바이에른(Bayern)주 정보보호기구는 바이에른주 노이마르크트(Neumarkt)시에 대해 시 보도자료에서 거론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인용한 지역신문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가 제재를 부과하였다.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감시위원회의 진정 횟수를 알리면서 진정의 90%가 세 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세 명이 제기한 진정 가운데 오직 12건만이 성공하였으며, 그들이 제기한 진정을 처리하는데 추가적 소요된 비용은 일반 사무 150일치 비용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인용한 지역신문에는 세 명의 이름과 소속정당이 게재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에서 언급된 세 명 중 한 명이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당사자는 해당 신문이 당사자와 나머지 두 사람을 여러 번 조롱하였고, 이를 통해 그는 ‘고소남(Querulant)’ 이미지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²²⁾ 당사자는 의회지도자로서 진정을 제기했을 뿐, 자연인으로서 정부행정을 간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수년이 지난 현재 그는 더 이상 지역 정치계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도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편집장은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항상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해 왔고,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와 개발정책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불만 제기가 의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불만 당사자는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할 당시 이미 해당 신문사에 여러 번 독자투고를 한 적이 있다. 결국, 불만 당사자가 해당 지역에서는 정치지도자로 이미 유명하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와는 크게 관련 없는 것으로 편집진은 판단하였다.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신문사가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신문사에 ‘비공개경고’ 제재를 부과하였다. 또한, 상급 행정기관인 주의 정보보호협약기구가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에 이미 경

22) 독일어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혹은 소송을 곧잘 제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문이 이 문제를 반복한 것에도 의미를 두었다. 일반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언론은 행정기관 보다 덜 엄격한 기준과 요구사항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거론한 보도에 대한 공적 이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평의회는 관련자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보도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빈번한 진정이 해당 지역에 높은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하지만, 이것이 관련자들을 ‘고소남’ 이미지로 고착화시키는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게다가 관련자들은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관련자들의 권리가 보도에 대한 공적 이해를 넘어선다고 언론평의회는 설명하였다.²³⁾

또 다른 사안으로서, 한 광역일간지는 극우정당 NPD²⁴⁾에 대한 해커집단 ‘no name crew’의 공격을 보도하였다. 기사는 해킹을 통해 얻은 익명의 NPD 기부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는데,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기부자들의 주거지를 표기하였다. 또한, 온라인 기사에 위치한 지도를 클릭하면 해커집단의 사이트로 링크되었다. 이를 통해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된 NPD 기부자들 명단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사는 나치 공격이 심한 베를린의 특정 거리를 피하라고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리의 명칭이 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한 독자가 해당 기사는 언론규약 1, 2, 4, 8, 9, 13조를 침해했다고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불만 제기자는 기사에서 목록으로 링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보도를 통해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NPD 기부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기사에 나타난 정보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고, 나치가 사는 것으로 거론된 베를린의 거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신문사의 법률대리인은 언론규약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반박하였다. 법률대리인은 사적 행동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면 그것은 언론에서 언급되어야 하며, 익명의 NPD 기부자들에 대해 독일 시민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격권을 규정한 언론규약 8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주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기사를 통해 NPD 기부자 목록에 링크하는 것이 목록에 언급된 사람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나치와 관련된 극우단체라 하더라도, 기부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독일 사회의 공적 이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은 관련자들의 인격권과 대중의 알 권리 사이에서 신중하게 처신해

23) Deutscher Presserat, 0051/13/3-BA, Einen Eindruck von Querulantenrum erweckt.

24)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의 약칭으로, 나치즘을 표방하는 극우정당이다.

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NPD 기부자 목록에 링크하는 것이 기사的重要内容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집 단계에서 이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²⁵⁾

사진 공개와 관련된 불만을 보면, 한 지역일간지가 거리를 걷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해당 사진에서 남자는 원형으로 표시되었는데, 해당 언론사는 이것을 ‘행운의 원 (Glückskreis)’ 이벤트로 게재하였다. 이벤트는 사진 속 원형으로 표시된 남자를 아는 독자가 4주 안에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면, 본인이 선택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독자가 해당 사진이 언론규약을 침해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신문이 언론규약 8조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원형으로 표기한 것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언론평의회는 우연히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것은 보도 윤리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진에서 특정인을 원형으로 표기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도시를 조망하는 일반적 풍경 사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행운의 원에 표기된 익명의 한 남자

지적하였다. 게다가 사진에 덧붙여진 설명은 당사자의 위치를 누설하였기에 더욱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개인정보는 언론규약에 의거하여 조건 없이 보호되어야 하고 스스로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공개에서 현저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신문사에 ‘공개경고’의 제재를 부과하였다.²⁶⁾

독자투고 관련 불만

한 지역신문은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을 독자 투고란에 게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투고자는 그의 편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주소가 공개되었다며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

25) Deutscher Presserrat, 0369/11/3-BA, NPD-Spender wollen lieber anonym bleiben.

26) Deutscher Presserrat, 0669/10/3-BA, Zufälliger Passant durch "Glückskreis" markiert.

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언론규약상 독자투고의 내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지했다는 점에서 신문의 편집책임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투고자가 이러한 부분에 동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기고가 줄어든 것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신문의 편집책임자가 이를 공지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위원회는 내용 축소에 관한 시민단체의 불만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편집책임자는 투고자의 이메일에 오직 이름만 있을 뿐 거주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자투고를 위한 편집기준을 보면 투고자의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편집 과정의 관행에 속한다. 독자투고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 정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고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투고자와 편집책임자는 이미 서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투고자의 신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투고자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번 투고하여 지면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거주지가 공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해당 사안 이전에는 투고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편집진은 이번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주소 공개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신문사가 언론규약 2조 6항(3)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의'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하였다. 언론규약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해 측면에서 주소 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언론은 특정인의 주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언론평의회는 신문의 편집진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언론평의회를 결정은 보면 투고자가 이미 여러 번 투고하였고, 주소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이 바뀌지 않으며 투고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제3자의 정보에 대해 편집진은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²⁷⁾

온라인 아카이브 관련 불만

한 지역신문은 친누나를 살해한 죄명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온라인판으로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는 피고가 심각한 가족불화로 인해 19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름, 나이, 성장 지역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의 아버지가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27) Deutscher Presserat, 0415/11/3-BA, Redaktion beruft sich auf "Sondertradition".

해당 기사는 DB화되어 온라인 아카이브에 저장되었고, 구글 등 다양한 검색엔진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를 살펴보면, 성(姓)과 가족의 거주지 등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도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다. 피고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기사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들이 출소 후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아버지는 온라인상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온라인판을 담당하는 편집책임자는 해당 기사를 차단했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신문이 인격권 보호를 규정한 언론규약 8조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주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언론규약 8조 1항(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건·사고,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 용의자, 원고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사진이나 어휘에서 노출되면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관련자의 보호받을 가치보다는 보도에 따른 공공의 이해가 더 큰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이번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이 납매 시간에서 발생했다는 특수함이 있지만, 친족 살인 혹은 그와 유사한 범죄가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예외적인 것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편집진은 기사 속 피고의 이름을 항상 익명으로 언급해야 하고,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에 존재하고 있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사는 관련자들의 희망에 따라 삭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⁸⁾

취재 조사 관련 불만

한 주간지의 여기자가 이틀 동안 자유롭게 정신병동을 돌아다니며 취재하였고, 이에 대해 한 여성이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한 사안이다. 주간지 기자는 환자들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고, 취재와 관련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한편,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한 여성은 미디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병원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불만을 제기한 여성은 가장 먼저 주간지 편집책임자에게 해당 사안을 항의하였다. 편집책임자는 해당 여기자와 대화를 나눈 후, 그녀가 환자 동의 없이 취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는 점이 병원장에게 노출되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환자는 병원장에게 심각한 공격을 받아야 했다. 이후 병원장에게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주간지 여기자로 드러났다.

불만을 제기한 여성은 여기자가 취재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28) Deutscher Presserat, 0380/12/3-BA, Bluttat innerhalb der Familie.

잡지사는 전화로 사과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예측할 수 없었기에 발생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여성은 주간지 여기자가 병원장과 통화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내부고발자의 실명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처리위원회는 병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누설한 것이 직업윤리를 규정한 언론규약 5조와 인격권을 규정한 언론규약 8조를 침해했다고 보고, ‘주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언론규약 8조에 따르면 언론은 정보자기결정을 주의하고 편집 관련 정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여기자가 편집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한 여성의 이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 언론규약 8조에 해당한다. 이름을 제공하는 것은 편집 관련 정보보호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언론규약 5조에 따르면 언론은 당사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사가 내부고발자의 배경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직업윤리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름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원의 동의에 달린 것으로써,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이 점을 훼손할 수 있다.²⁹⁾

결론

독일 언론평의회는 편집정보 보호는 개인의 인격권과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는 현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지 않는 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독일 언론평의회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규약을 통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편집정보 보호는 취재 및 기사 내용에 가려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규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편집정보 보호에 투영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정보자기결정권을 개인 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로 전제하는 것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공개되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사회적 감시자로서 언론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스로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독일 언론규약이 규정하고, 언론평의회가 실천하고 있는 편집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과 규제는 건강한 언론환경을 구축하려는 독일 사회의 자정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독일의 사례에 기대어 편집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29) Deutscher Presserat, 0540/13/3-BA, Chefarzt: "Dann könne Sie packen und gehen!".